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②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⑧ >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⑧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⑥-⑦)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⑨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⑩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⑪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⑨-⑩)	
3.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⑭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⑫-⑬)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⑧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	1인당 공제금액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기업	수도권 내	청년등		1천1백만원	
		청년등 외		7백만원	
	수도권 밖	청년등		1천3백만원	
		청년등 외		7백7십만원	
	계				
중견기업	수도권 내	청년등		8백만원	
		청년등 외		4백5십만원	
	수도권 밖	청년등		9백만원	
		청년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기업	수도권 내	청년등		4백만원	
		청년등 외			
	수도권 밖	청년등		5백만원	
		청년등 외			
	계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⑮ ≥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⑮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⑰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⑮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⑮-⑰)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⑲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⑳ 1차년도(직전 과 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㉑ 2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㉔ ≥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㉒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㉓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㉔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㉒-㉓)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㉕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㉖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㉗ 3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 등이 감소하여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2차년도 세액공제가 유예된 경우 세제지원 요건 : ㉙ ≥ 0

1.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㉘ 최초 공제받은 과세 연도 상시근로자 수	㉙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2022년)	㉚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2018.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19.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 유예세액 계산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㉛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㉜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㉝ 세액공제액 (유예 적용분)
2018.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			
	여			
2019.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			
	여			

④ 세액공제액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 ㉑ 2차년도 세액공제액 + ㉗ 3차년도 세액공제액 + ㉝ 세액공제액(유예 적용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 (작성요령) 2020년, 2021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중대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이 2022년 분에 대해 추가로 고용중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년도는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3차년도는 추가공제가 적용되는 과세연도(1차연도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를 말합니다.

작성항목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직전전 과세연도	비고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2022년 귀속	2021년 귀속		2022년 최초공제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2022년 귀속	2021년 귀속		2021년 최초공제분 추가공제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2022년 귀속		2020년 귀속	2020년 최초공제분 추가공제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가.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 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1인당 공제금액은 2021.12.31. 및 20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시 상향 적용합니다.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증가	1,100만원	1,300만원	800만원	9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증가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450만원	-	-

3. ⑥란부터 ⑧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4. ⑨란부터 ⑪란까지의 청년등 상시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19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5. ⑫란부터 ⑭란까지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를 말합니다.

6. ⑮, ⑯, ⑰ 계산 시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합니다.

7. 2차, 3차년도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추가납부세액계산서’, 별지 제40호서식(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및 별지 제40호서식(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